# 실종아동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종아동 ]**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발견되어 가정으로 복귀되었지만, 일부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실종 아동은 생존과 발달에 위험이 있고, 그 가족은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생업의 상실, 가족해체 등 다중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실종아동 ..... 1
1. 실종아동 개관 ..... 4
1.1. 실종아동의 개념 ..... 4
1.1.1. 실종아동이란? ..... 4
2. 실종아동 예방 ..... 5
2.1. 실종아동 예방조치 ..... 5
2.1.1.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 5
2.1.2. 실종예방교육 등 ..... 6
2.1.3. 유괴발생 예방 ..... 8
3.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지원 ..... 12
3.1. 실종아동의 발견 ..... 12
3.1.1.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 12
3.1.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 13
3.2. 수사절차 ..... 14
3.2.1. 실종아동 수사 ..... 14
3.2.2. 유전자검사 ..... 16
3.2.3.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 17
3.3. 실종아동의 복귀 ..... 18
3.3.1.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 18

# 1. 실종아동 개관

## 1.1. 실종아동의 개념

### 1.1.1. 실종아동이란?

#### 실종아동의 개념

##### 실종아동이란?

▪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용어의 뜻
>
> ·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 “약취(略取)”란 주로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 · “유인(誘引)”이란 약취와 달리 속이거나 유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의 판단을 그릇되게 한 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경우는 물론, 현재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불법으로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2. 실종아동 예방

### 2.1. 실종아동 예방조치

#### 2.1.1.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 지문 등 정보의 범위(「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 ·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
> ·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
>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지문 등 정보의 등록방법**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 등록 동의서에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사전신고증의 발급**

사전등록시스템에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는 사전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사전 신고한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 경찰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
-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2).

※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신청 바로가기

### 2.1.2. 실종예방교육 등

#### 실종아동예방 교육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2호).

▪ 교육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교육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별표 6).

| 구분 | | 내용 |
|---|---|---|
| 실시 주기<br>(총 시간) | | 3개월에 1회 이상<br>(연간 10시간 이상) |
| 교육 내용 | 초등<br>학교 취학 전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br>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br>3. 유괴범에 대한 개념<br>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 | 초등학교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br>2. 유괴범에 대한 개념<br>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br>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br>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
| | 중·고등학교 |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br>2. 유괴사고 발생시 대처법 및 예방법<br>3. 유괴·유인 상황 목격시 신고요령<br>4. 가출예방 관련 교육 |
| 교육방법 |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br>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br>3. 시청각 교육<br>4. 사례 분석 |

### 실종예방을 위한 아이 교육법

▪ 실종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다음 사항은 꼭 가르치세요(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 아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 쇼핑몰이나 공원 등에서 길을 잃을 경우, 무작정 길을 걷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기다리고, 주위 어른들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 부모를 잃어 버렸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상점 등에 들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 182 혹은 ☎ 112에 신고할 것
-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하는 습관을 기르게 할 것
-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즉, 길을 물어 보며 차에 태우거나 엄마 친구라고 하거나, 강아지를 함께 찾아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할 것)

· 만약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데려 가려고 할 경우에는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

※ 그 밖에 아동실종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실종예방지침>과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 실종아동 조기발견 교육·훈련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

※ "관리주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4항 참조)

※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훈련 내용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 관리주체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 2.1.3. 유괴발생 예방

###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

####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 수칙)

▪ 과자를 사주거나 돈을 주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방법

▪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는 방법

▪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며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 길을 물어보며 안내를 부탁하는 방법

▪ 그 밖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납치하는 방법

※ **유괴 사례**

1)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를 위협해 납치하는 경우

· 범인이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초등생 아들을 등교시키려고 차 시동을 거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타 칼로 위협한 후 아들을 납치해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4차례에 걸쳐 현금을 요구한 사례

2) 강제적인 방법으로 유괴하는 경우

·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아노 학원에 가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렌트 차량에 강제로 태워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차량 뒷좌석에 납치 감금 후 피해자의 모(母)에게 휴대전화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

3) 길을 물어보며 납치하는 경우

· 한 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다.”며 유혹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납치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사례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알림마당-참조사례 >

## 유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CCTV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

- 도시공원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유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다음에 해당하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그 밖에 아동유괴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수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괴죄(약취·유인죄)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죄

| 내용 | | 처벌 |
|---|---|---|
|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제6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 처벌) |
|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서 그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 |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위 ①, ②,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 및 위 ①, ②의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7항) |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 | |
|---|---|
| 위 ① 또는 ②의 ㉮,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b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8항) | 1년 이상<br>10년 이하의 징역 |

## 3.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지원

### 3.1. 실종아동의 발견

#### 3.1.1.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실종아동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광고물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로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호).

**※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 주세요.**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어야 해요.

·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세요.

· 아이가 진정이 되면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세요. 아이가 집에 간다고 해도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에요.

·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의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부탁하세요.

·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두세요.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수칙 >

### 3.1.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 등

##### 실종아동 발생신고

▪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4조제1항].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참조).

▪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된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해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5조).

##### 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6조제1항).

▪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6조제2항).

#### 실종아동 미발견시 조치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발생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7조제1항).

▪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해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7조제2항).

#### 경보의 해제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을 발견해 보호자 등에게 인계한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8조제1항).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8조제2항).

## 3.2. 수사절차

### 3.2.1. 실종아동 수사

####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 수색 또는 수사개시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이 약취·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경찰관서의 장은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단순한 실종으로 인정되면 즉시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는 등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 실종경보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제4항).

> ※ **실종경보·유괴경보**
>
> ·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종아동등에 관해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
> ·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 경찰청장은 실종경보를 발령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제1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제7항).

-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 실종·유괴 경위
-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그 밖에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 위치추적

### 개인위치정보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단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 위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 장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3).

####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등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 조사 등

#### 출입·조사

▪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이나 아동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위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출입 및 조사 방해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

## 3.2.2. 유전자검사

### 유전자검사의 실시

####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함)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본문).

※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단서).

▪ 경찰청장은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누구든지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호).

####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호).

####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의 경우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 3.2.3.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 보호시설 입소자 지문 등 정보 등록·관리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단서).

####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 경찰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관리하고 있는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전단).

-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2).

### 장기실종자 추적

#### 장기실종아동이란?

▪ "장기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제5호].

#### 장기실종자 추적팀의 설치와 업무

▪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추적·조사를 위해 장기실종자 추적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5조).

-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조사
- 실종아동 사건의 수색·수사 지도
- 그 밖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

#### 실종아동의 정보 보존기간

▪ 경찰청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3항).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 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 실종선고

#### 생사불분명시 실종선고

▪ 부재자(실종아동)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9조제1항 전단).

## 3.3. 실종아동의 복귀

### 3.3.1.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 실종아동의 복귀

###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본문).

> ※ “전문기관”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단서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아동학대행위자
- 가정폭력행위자
-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실종아동 인수확인

▪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인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